

■ 최신 법령 ■

[공정거래] 개정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시행

박형삼 변호사 | 이병주 변호사

1. 개정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시행(2014. 2. 14. 시행)

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의 규제범위와 금지행위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정 시행령이 개정 법 시행과 맞추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가.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

(1) 규제대상(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)

- ① **지원주체** :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
- ② **지원객체** : 총수 및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%(비상장사 20%)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

(2) 금지되는 행위유형(시행령 별표 1의3)

- ① **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** : 자금·자산·상품·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. 다만, 정상가격과 차이가 7% 미만이고, 연간 거래총액이 50억 원(상품·용역의 경우 200억 원) 미만 제외
- ② **사업기회 제공** :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. 다만,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,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공해 준 경우 제외
- ③ **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** :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·

조사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·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·평가하는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. 다만, 상품·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 12% 미만 & 200억 원 미만 제외

(3)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예외사유 (시행령 별표 1의4)

- ① **효율성 증대** : 다른 자와 거래로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·판매증대·품질개선·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한 경우
- ② **보안성** : 다른 자와 거래 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·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
- ③ **긴급성** : 경기급변·금융위기·천재지변·해킹·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

나. 통행세 금지유형(시행령 별표 1의2 라항)

- (1)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
- (2)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

2. 다운로드: 「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2월 4일자 보도참고자료」

[공정거래] 개정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시행

1. 개정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시행(2014. 2. 14. 시행)

개정 하도급법에서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내용 구체화 및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유·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가.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구체화(시행령 제6조의 2)

- (1)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
- (2)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
- (3)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
- (4)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
- (5) 계약기간 중 하도급법 제16조의 2에 따른 단가조정요청권을 제한하는 약정
- (6) 기타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·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약정

나.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유·절차를 보완(시행령 제8조)

: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 2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를 구체화

- (1)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신청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
- (2)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제3채권자가 압류·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
- (3) 수급사업자에게 상환부담이 있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
- (4)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

- (5)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
2. 다운로드: [「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2월 4일자 보도참고자료」](#)